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574
----------	------

2026년 4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년 3월 30일 이상욱 의원(찬성 13인)
2. 회부일자 : 2026년 3월 31일
3. 상정일자 : 제335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 4월 2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상욱 의원)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편의시설의 관리·점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편의증진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 이에 편의시설 설치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
- 시장의 의무를 책무로 변경하고, 시설주 협조의무를 강화함(안 제3조 및 제4조).
- 편의시설 설치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 사전점검 및 실태점검의 주체를 시설주관기관으로 정비하고 점검 체계를 강화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윤혜숙)

1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이 관리와 점검 중심으로 운영되어 사전점검 및 실태점검의 주체와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어, 용어정의 신설을 통해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계획 및 시행계획, 실태조사 근거 마련, 점검체계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등의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발의됨.

2 검토의견

가. 정의 신설 (안 제2조)

- 본 개정조례안 제2조에서는 기존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따른다는 현행 정의규정에 각각의 용어정의를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범위와 책임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u>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2조(정의)	-----	-- 다음과 같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신 설>	2. “시설주관기관”이란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을 말한다.
<신 설>	3. “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개정안 제2조제2호에서 시설주관기관을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으로 명시한 것은 사전점검 및 실태점검의 수행주체를 구체화하여 행정집행의 혼선을 방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음.
- 또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전점검 및 실태조사 등이 실제 현장에서 자치구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에서도 “시설주관기관”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범위내에서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한 것은 입법기술상 허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장애인등 편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략)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나. 편의시설 설치계획 및 시행계획 (안 제6조)

- 본 개정조례안 제6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편의시설 설치계획 및 시행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시행과 관하여는 법 제12조를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장애인등편의법」 에서는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법 제3조1)과,

편의시설의 설치기준(법 제8조²⁾)을 명시하고, 동법 제12조³⁾에서 편의시설의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12조에서는 시설주관기관⁴⁾이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조⁵⁾에서는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실적을 매년 수립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1998년 법률 시행 이후, 2000년 제1차 편의시설 확충·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후로 5년마다 편의시설 확충·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

-
- 1) 「장애인등편의법」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들이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주
 2.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 2)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 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 3) 「장애인등편의법」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2. 대상시설의 건축·대수선(大修繕)·용도변경 등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
 3.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시행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 등을 종합하여 제12조의2에 따른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4)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정의)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 5)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6조(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①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의 구체적 범위, 설치계획, 시행실적의 제출시기·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립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2025년 제6차 서울특별시 편의증진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서울시에서는 이와 관련해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의 자립적인 일상생활지지, 제도개선 및 역량강화 등의 분야에서 지표를 수립해 이를 점검·지원하고 있음.

<표> 서울시 제6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에 따른 주요 세부사업 및 지표

분야	세부사업	지표	2025	2026	2027	2028	2029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확인건수 (건)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편의시설 설치실태 모니터링	설치율	99%	99%	99%	99%	99%
		적정설치 설치율	99%	99%	99%	99%	99%
	신 규 공공건축 편의시설 모니터링	적정설치	-	-	-	90%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인증건수 (건)	5	6	12	5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개발	매뉴얼 개정(건)	1건	-	-	-	-
	신 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합동단속	계획수립 (회)	1 (연1회)	1 (연1회)	1 (연1회)	1 (연1회)	1 (연1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일상)	적발건수 (건)	72,000	68,500	65,000	62,000
장애인의 자립적인 일상생활 지지	저소득 장애인 집수리	집수리 (가구)	200	250	300	300	300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지원가구 (가구)	33	35	40	40	40
	장애인 복지콜	탐승인원 (명)	420,000	432,000	445,000	458,000	471,000
제도개선 및 역량강화	신 규 법령·제도 개선사항 반영	키오스크 설치지원 등	보건복지부 제도변경 등 반영하여 확정				
		편의시설 설치 전문역량 강화	교육진행 (회)	연 2회	연 2회	연 2회	연 2회
	장애인 편의시설 시민체험	행사진행 (회)	연 5회	연 5회	연 5회	연 5회	연 5회

- 본 조항은 상위법에 명시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중장기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근거를 조례에 명시적으로 신설한 것으로,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 추진기반 마련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특히 서울시에서는 이미 5년 단위 설치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기존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계획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책임성과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일부 조항은 상위법 규정을 조례에 재기재한 측면이 있어 입법기술상 검토의 여지는 있으나, 실제 행정 운영을 반영하여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다. 실태조사 (안 제7조)

- 조례개정안 제7조는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편의시설 설치의 촉진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설치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⁶⁾에서는 시장이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5년마다 1회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기시행하고 있으며, 별도로 매년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2023년 보건복지부의 주관으로 지자체와 공동으로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조사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98.4.11) 이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된 건물을 대상으로 「장애인등편의법」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이 기준에 맞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
 - 해당조사 결과 서울시의 대상건물은 29,957개였으며, 설치율은 92.1%, 적정설치율은 84%로 나타남.
- 이와 별도로 서울시에서는 최근 사용승인한 건물을 대상으로 매년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5년도에는 ‘24년 사용승인한 건물 1,653개소 대상 실태점검을 실시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음.

6) 「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실태조사)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및 결과공표의 범위·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설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표> 2024년 사용승인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실태점검 결과

시설수* (건물)	설치 대상(건) (A)	조사 결과 (건)				적정 설치율(%) (C/A)	단순 설치율(%) (B/A)
		설치			미설치		
		계 (B)	적정설치 (C)	미흡설치 (D)			
1,653	73,692	73,143	72,929	214	549	98.96	99.26

*시설수(건물)은 중복 및 비해당 건물을 제외한 실제로 조사한 건물 숫자임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 제7조는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및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조례에 명시적으로 신설한 것으로, 상위법의 취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행 범위 내에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라. 편의시설의 실태점검 (안 제9조)

- 본 개정안 제7조는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및 편의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한 실태조사의 실시근거를 조례에 명시적으로 신설한 것으로,
- 현행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실태점검 사항을 제9조로 재구성하면서 점검의 주체를 상위법과 일치시켜 “시장”에서 “시설주관기관”으로 변경하고, 사전점검-실태점검으로 이어지는 편의시설 점검체계를 명확히 정비하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에서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조항에서 규정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는 각각 「장애인

등편의법」 제23조⁷⁾와 제24조⁸⁾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시설주가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단계적 제재 구조를 갖추고 있음.

- 본 조항에서는 상위법 제11조에 규정된 실태조사와는 별도로 “시설주관기관”인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청장’을 실태점검 주체로 명확히 하고,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점검 근거를 구체화함으로써, 상위법에 규정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사후조치 절차를 조례로 명시해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 7) 「장애인등편의법」 제23조(시정명령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8) 「장애인등편의법」 제24조(이행강제금)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이행강제금의 금액
 2. 부과 사유
 3. 납부기한
 4. 수납기관
 5. 이의 제기 방법
 6. 이의 제기 기관
- ⑤ 시설주관기관은 최초로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⑥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⑦ 시설주관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편의시설의 실태점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설주의 의무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전점검 후에 실태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치구청장에게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신 설></p> <p><신 설></p>	<p>제9조(편의시설의 실태점검)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시설주의 의무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상시설의 사전점검 후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은 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 및 자치구청장이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p> <p>③ 시설주관기관은 제8조에 따른 점검 ----- ----- 법 제23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 -----.</p> <p>④ 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시설주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p>

- 본 조항에서는 실태점검을 시장과 자치구청장이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점검의 효율성과 행정 협업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상위법 체계에 맞추어 규정함으로써 편의시설 설치의무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아울러, 본 조 제5항에서 실태점검을 실태조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실태조사와 점검간 연계를 통해 행정의 중복을 줄이고, 정책활용도를 제고하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마. ‘교육실시’ 를 ‘교육 및 홍보’ 로 확대 (안 제12조)

- 개정안 제12조에서는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조례에 홍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
- 이미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및 자치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를 통해 교육 및 자료발간·홍보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추가 예산 등은 소요되지 않으며,
- 이는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교육 실시)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거나 관련 자료 등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 ----- ----- ----- ----- 발

현 행	개 정 안
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생 략)	간하고 홍보--. ② (현행과 같음)

바. 기타사항

- 이 외에도 개정조례안에서는 조례개정에 따른 조문의 수정(안 제4조), 사전점검 주체의 수정(안 제8조), 현행조례에서 쓰이는 용어의 정비(안 제3조, 안 제11조)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한 조문을 신설(안 제5조)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의무) ①·②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시설주의 의무) ① (생 략) ② 시설주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 내 및 관련 자료 제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주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8조 및 제9조----- ----- ----- 등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
<신 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대하여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제8조(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① 시설주 관기관은 제7조----- -----

현행	개정안
<p>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u>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u></p> <p>② <u>시장</u>은 시설주가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8조제2항보다 완화된 기준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점검을 하여야 한다.</p> <p>③ <u>시장</u>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점검대상 시설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u>시장</u>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점검 결과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지 않았거나 완화된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p>	<p>----- <u>설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u></p> <p>② <u>시설주관기관</u>----- ----- -----.</p> <p>③ <u>시설주관기관</u>----- ----- -----.</p> <p>④ <u>시설주관기관</u>----- ----- ----- -----.</p>
<p><u>제7조 (생략)</u></p>	<p><u>제10조 (현행 제7조와 같음)</u></p>
<p><u>제8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u>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대상에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u>제11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u> ----- -- <u>따른 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u>----- ----- -----.</p>
<p><u>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생략)</u></p>	<p><u>제13조(협력체계 구축) (현행과 같음)</u></p>
<p><u>제11조(시행규칙)</u>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삭제></p>

※ 부서 의견 : 원안가결

- 「장애인등편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추진 중인 편의시설 설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한 조례상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조례상 용어를 상위법과 통일성 있게 정비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에 동의함.

3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 체계와 통일시켜,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시행 중인 편의시설 설치계획 및 시행계획의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사전 점검 및 실태점검과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로 이어지는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실태조사와 실태점검을 연계한 점검·조치 계획을 정비하여 정책 추진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 추진체계와 집행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과의 정합성 및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개정안에서 “시설주관기관”으로 점검주체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과 자치구간 역할 분담 및 권한 배분을 명확히 하는 등 기능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효성 확보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욱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574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3월 30일
발 의 자: 이상욱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태수,
남창진, 유만희, 윤기섭,
이성배, 최민규, 허 · 훈,
황철규 의원(13명)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편의시설의 관리·점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전 점검 및 실태점검의 주체와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
- 이에 편의시설 설치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
- 나. 시장의 의무를 책무로 변경하고, 시설주 협조의무를 강화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편의시설 설치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 라.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 마. 사전점검 및 실태점검의 주체를 시설주관기관으로 정비하고 점검 체계를 강화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를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시설주관기관”이란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을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시장의 의무)”를 “(시장의 책무)”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5조 및 제6조”를 “제8조 및 제9조”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를 “등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로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편의시설 설치계획 및 시행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시행과 관하여는 법 제12조를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편의시설 설치의 촉진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설치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종전의 제5조) 제1항 중 “시장은 법 제7조”를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7조”로,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를 “설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시장”을 각각 “시설주관기관”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시설주관기관은 제8조에 따른 점검”으로,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을 “법 제23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시설주의 의무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상 시설의 사전점검 후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은 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 및 자치구청장이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시설주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1조(중전의 제8조) 중 “따라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대상”을 “따른 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을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으로, “개인에 대하여”를 “개인에게”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9조)의 제목 “(교육 실시)”를 “(교육 및 홍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발간”을 “발간하고 홍보”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0조)의 제목 “(협력체계 구축 등)”을 “(협력체계 구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u>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2조(정의) ----- ----- <u>다음과 같다.</u></p> <p>1. “<u>장애인등</u>”이란 「<u>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u>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u></p> <p>2. “<u>시설주관기관</u>”이란 <u>서울특별시 장 및 구청장을 말한다.</u></p> <p>3. “<u>시설주</u>”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u>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u></p>
<p>제3조(<u>시장의 의무</u>) ①·② (생략)</p>	<p>제3조(<u>시장의 책무</u>) ①·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u>시설주의 의무</u>) ① (생략)</p> <p>② 시설주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 및 관련 자료 제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4조(<u>시설주의 의무</u>)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제8조 및 제9조</u>----- ----- ----- <u>등 필</u> <u>요한 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u> ---.</p> <p>제5조(<u>다른 조례와의 관계</u>) <u>장애인등</u></p>

<신 설>

<신 설>

제5조(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대하여 시

의 편의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편의시설 설치계획 및 시행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시행과 관하여는 법 제12조를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편의시설 설치의 촉진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설치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7조-----

설이 완공되기 전에 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주가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8조제2항보다 완화된 기준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점검대상 시설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점검 결과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지 않았거나 완화된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편의시설의 실태점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설주의 의무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전점검 후에 실태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치구청장에게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설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

-----.

③ 시설주관기관-----

-----.

④ 시설주관기관-----

-----.

제9조(편의시설의 실태점검)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시설주의 의무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상시설의 사전점검 후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은 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 및 자치구청장이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8조에 따른 점검 -----
----- 법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7조 (생 략)

제8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대상에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실시)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생 략)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

-----.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시설주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11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
----- 따른 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
----- 개인에게 -----

-----.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

----- 발간하고 홍보--.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협력체계 구축) (현행과 같음)

<삭 제>

다.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사전점검 및 실태점검 주체를 '시장'에서 '시설주관기관'으로 변경하고,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등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 대부분의 개정 내용이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제7조(실태조사¹⁾)는 해당부서(장애인자립지원과) 확인 결과 국가단위 실태조사가 5년 단위로 시행되고 있으며 비용의 일부를 서울시²⁾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신 동 규

☎ 02-2180-7955

e-mail : abasiclife@seoul.go.kr

※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

1) [기존 조사자료 활용 가능성 검토] 해당 실태조사는 자료확인 결과 국가단위 정책기초 자료이나 지역별 조사결과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 이를 지역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경우 서울시 차원의 별도 실태조사 실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만일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실태조사 금액(30,000~4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2) [국가단위 실태조사 서울시 재정부담 규모] 가장 최근 조사인 2023년의 경우 1,200,000천원 가량 서울시가 부담한 바 있고, 2028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금액을 부담할 것으로 보임